

**뉴욕 시 인적자원관리국(NYC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규칙안에 대한 공청회와 발언 기회에 대한 공고 및 비상규칙 효력연장에 관한 공고**

**HRA의 제안 사항은?** 뉴욕 시 인적자원관리국(New York City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HRA)은 보호 시설에서 거주하는 가구들을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동시키고 가구가 보호 시설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는 시장의 우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1) 노숙 독신 성인 및 미성년 자녀가 없는 성인 가족이 지역사회 내 거주(LINC) 가족 및 친구 재결합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LINC VI)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 LINC VI를 수령하는 가구가 현재 보호 시설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 아니었다면 그런 프로그램의 최초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LINC I, II, III, IV 또는 V 임대료 지원이나 CITYFEPS 임대료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뉴욕 시 행정 규정 타이틀 68의 7장과 8장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수정안은 현재 2015년 9월 2일에 발표된 긴급 규칙을 통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청회 개최 시간 및 장소는?** HRA는 규칙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청회는 2015년 12월 11일 오전 9시 30분에 맨해튼 다운타운에 위치한 Spector Hall, 22 Reade Street 1층에서 개최됩니다.

**규정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음의 방법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NYC 규칙 웹사이트를 통해 HRA에 의견을 보낼 수 있습니다: <http://rules.cityofnewyork.us>.
- **이메일.** 서면 의견서를 [constituentaffairs@hra.nyc.gov](mailto:constituentaffairs@hra.nyc.gov)에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제목에 "LINC 6 Proposed Rule"을 포함해 주십시오.
- **우편.** 의견을 다음 주소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New York City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The Office of Constituent Services  
150 Greenwich Street, 31st Floor  
New York, NY 10007**

- **팩스.** 팩스번호 212-331-5998로 의견을 보낼 수 있습니다. 팩스 표지에 "LINC 6 Proposed Rule"을 포함해 주십시오.
- **공청회 출석을 통한 의견 개진.** 공청회에서 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청회를 시작할 때 신청해야 합니다. 최대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의견서 제출 시한이 있습니까?** 의견서 제출 마감일은 2015년 12월 11일입니다.

**공청회 참석을 위해 도움이 필요할 경우 요청 방법은?** 공청회에서 통역이 필요하거나 장애에 따른 편의 시설이 필요한 경우, 2015년 12월 4일 이전에 알려 주어야 합니다. 929-221-5188번으로 전화를 하거나 917-639-0296번으로 팩스를 보내거나 다음 주소로 우편을 이용해 연락하십시오.

**HRA Rental Assistance Programs  
150 Greenwich Street, 36th Floor  
New York, NY 10007  
Attention: Public Hearing**

본 규정안에 대해 개진된 의견을 검토할 수 있는가? <http://rules.cityofnewyork.us/>를 방문해서 규정에 대해 온라인으로 접수된 의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청회가 끝나고 며칠 내에 규칙안에 대해 온라인으로 제출된 모든 의견의 사본, 서면 의견서 사본 및 공청회에서 개진된 구두 의견에 대한 요약서가 HRA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본 HRA 규칙 제정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뉴욕 주 사회보장 서비스법(Social Services Law) 섹션 34, 56, 61, 62, 77 및 131 및 뉴욕 시 헌장(New York City Charter) 섹션 603 및 1043에 근거하여 HRA는 본 규정을 제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제안된 규정은 HRA에서 규정 관련 안건을 공표했을 당시 고려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HRA의 최근 규정 관련 안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HRA의 규칙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HRA 규칙은 뉴욕 시 규정 타이틀 6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칙 제정 과정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HRA는 규칙 제정 또는 개정 시 뉴욕 시 헌장 섹션 1043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공고는 뉴욕 시 헌장 섹션 1043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긴급 규칙의 효력연장에 대한 공고

뉴욕시 헌장 제1043(i)(2)조에 따라, 2015년 9월 2일 공포된 지역사회 내 거주(LINC VI) 가족 및 친구 재결합을 위한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 및 효력을 확대하는 비상규칙은 이에 2015년 12월 30일까지 60일 연장하여 효력을 가지게 됨을 알립니다. HRA가 뉴욕시 헌장 제1043(e)조에 규정된 일반인들의 의견서와 공청회 절차를 거쳐서 LINC VI 프로그램에 관한 최종 규칙을 채택하는 데 이 60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 규칙안의 근거 및 목적

뉴욕 시 인적자원관리국(New York City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HRA)은 노숙자가 보호 시설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보호 시설에서 거주하는 가구들을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동시키고 가구가 보호 시설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는 시장의 우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HRA이 다음과 같은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뉴욕 시 행정 규정 타이틀 68의 7장과 8장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1) 노숙 독신 성인 및 미성년 자녀가 없는 성인 가족이 지역사회 내 거주(LINC) 가족 및 친구 재결합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LINC VI)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LINC VI에 대한 자격 기준을 노숙 독신 성인과 성인 가족을 포함하도록 확장하여, HRA와 DHS가 추가 가구를 지역 사회의 가족과 친구가 있는 주택으로 재배치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같이 LINC VI를 확장하면 노숙 독신 성인과 성인 가족에게 보호 시설에서 나가는 가족의 숫자를 증가시키고 보호 시설로 들어가는 가족의 숫자를 줄이는 새로운 선택방안을 제공하여, 보호 시설 시스템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2) LINC VI을 수령하는 가구가 현재 보호 시설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 아니었다면 그런 프로그램의 최초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LINC I, II, III, IV 또는 V 임대료 지원이나 CITYFEPS 임대료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변경을 통해 임시로 주인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가구가 다른 형태의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을 수 있으며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주거 시설로 이사하면서 보호 시설에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경은 LINC VI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늘려 궁극적으로 가구가 보호 시설로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늘릴 것입니다.

이 수정안은 현재 2015년 9월 2일에 발표된 긴급 규칙을 통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안이 채택되면 변경 사항을 영구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HRA의 권한은 뉴욕 사회보장 서비스법 34, 56, 61, 62, 77, 및 131조 및 뉴욕 시 헌장 603조 및 1043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한다(shall)" 및 "반드시 해야만 한다(must)"는 의무 요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달리 명시되거나 해당 맥락에서 달리 지시되지 않는 한 우리 국의 본 규칙에서는 혼용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은 새롭게 작성된 부분입니다.

삭제된 문장은 [괄호에 넣어졌습니다].

섹션 1. 뉴욕 시 행정 규정 타이틀 68, 섹션 7-01의 제목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 제7-01조 정의.

(a)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LINC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은 본 [장] 하위 장에 기술된 LINC I, LINC II 및 LINC III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집합적으로 의미한다.

(b) "뉴욕시 보호 시설 시스템"은 DHS 보호 시설 및 HRA 보호 시설을 의미한다.

(c) "DHS"는 뉴욕시 노숙자 서비스부(Department of Homeless Services)를 의미한다.

(d) "DHS 쉼터"는 DHS가 또는 DHS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자녀가 있는 가족들을 위한 보호 시설을 의미한다.

(e) "근로 소득"은 뉴욕 행정규정 제18장, 제352.17조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규정되고 산출된다. 단, 보조금 지원 고용(subsidized employment)을 통해 얻은 수입은 포함되지 않는다.

(f) "총 수입"은 근로 소득 및 불로소득의 합을 의미한다.

(g) "가구"란 공공 지원(Public Assistance) 수령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본 장에 따라 취득된 거주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고/있거나 앞으로 거주할 예정인 모든 개인을 집합적으로 의미한다.

(h) "HRA"는 뉴욕시 인적자원관리국(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을 의미한다.

(i) "HRA 쉼터"는 뉴욕 행정규정 타이틀 18의 섹션 452에 따라 HRA가 또는 HRA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가정 폭력 보호 시설을 의미한다.

(j) "LINC VI"는 본 장의 하위 장 C에 따라 수립된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j)] (k) "공공 지원"이란 사회복지법 § 349에 의거한 가족 지원(Family Assistance) 프로그램 및/또는 뉴욕 사회복지법 § 159 및 이에 따라 공표된 규정에 의거한 안전망 지원(Safety Net Assistance) 프로그램에서 지급되는 월별 보조금 및 쉼터 수당을 포함한 혜택을 의미한다.

[(k)](l) "프로그램 참여자"는 LINC 임대료 지원이 적용되었거나 적용 중인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인을 의미한다.

[(l)](m) "불로 소득"은 뉴욕 행정규정 제18장, 제387.10조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규정되고 산출된다. 단,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입만 포함한다.

[(m)](n) "보조금 지원 고용"은 뉴욕 사회복지법 § 336(1)(b)-(c)에서 사용된 용어처럼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 분야 고용형태 또는 보조금 지원을 받는 공공 분야 고용형태를 의미한다.

[(n)](o) "비보조금 지원 고용(unsubsidized employment)"은 뉴욕 사회복지법 § 336(1)(a)에 사용된 용어처럼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고용 형태를 의미한다.

§ 2. 뉴욕 시 행정 규정 타이틀 68, 섹션 7-02의 제목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 § 7-02 LINC I, LINC II 및 LINC III 프로그램의 운영

HRA는 본 장의 하위 장에 따라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LINC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단, HRA의 가족독립관리국(Family Independence Administration)이 DHS의 정책 기획부(Division of Policy and Planning) 및 가족 서비스부(Division of Family Services)와 협의를 통해 본 장 섹션 7-03 또는 7-04의 하위 조항 (a) (1)절 하위 절 (C) 또는 본 장 섹션 7-05의 하위 조항 (a) 하위 절 (3)에 따라 현재의 보호 시설 거주자에 대한 최초의 자격 여부 결정은 예외로 한다.

§ 3. 뉴욕 시 행정 규정 타이틀 68, 섹션 7-02의 제목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 § 7-03 LINC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a) LINC I 프로그램의 최초 자격 및 인증 요건

(1) 1년차 LINC I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신청 자격이 되려면 가구는 인증 당시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 해당 가구 중 적어도 한 명은 공공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하며, 공공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가구 구성원은 그러한 혜택을 수령하고 있어야 한다.

(B) 해당 가구는 뉴욕 행정규정 타이틀 18의 섹션 369.2(c)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는 자녀를 포함해야 한다.

(C) 해당 가구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구성원을 적어도 한 명 포함해야 한다.

(i) 뉴욕 주 행정규정 타이틀 18의 351 및 352부에 따라 DHS가 결정하는 바와 같이 또는 뉴욕 행정규정 타이틀 18의 섹션 452.2(g) 및 452.9에 따라 HRA가 결정하는 바와 같이 보호 시설에 거주할 자격이 있고 [(ii)], 뉴욕시의 보호 시설 시스템에 현재 거주하고 있다. [(D) 본 하위 조항의 (1)절 하위 절 (C)에서 언급한 가구는]그리고 역일로 3일 간의 공백을 제외하고 인증 전에 90일 연속으로 뉴욕시 보호 시설 시스템에 거주해야 한다[거주했어야 한다].

(ii) LINC VI 임대료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HRA가 정한 양식과 형식으로 LINC I 임대료 지원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E)](D) (E) 해당 가구 중 적어도 한 명은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구성원 또는 구성원들의 근로 시간은 합산하여 비보조금 지원 고용 형태로 주당 최소 35시간이 되어야 한다.

[(F)](E) 해당 가구는 인증 전 최소 90일 동안 근로소득에 대해 증명하여야 한다.

[(G)](F) 해당 가구의 총소득 합계는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연방 빈곤선의 20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 LINC III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을 받을 가구의 수는 가용 자금 수준에 따라 제한된다. 본 장의 7-09조 (a)항에 의거해 HRA의 재량에 따라 가구가 본 항의 (1)호에 명시된 자격 요건에 부합하고 해당 가구에게 LINC I 임대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금이 있는 경우 HRA 및/또는 DHS는 이러한 가구에 인증 서신을 발행하도록 한다. 본 서신은 만료일을 포함하며 해당 가구가 LINC I 임대료 지원이 적용되는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집행되는 시점까지 본 하위 조항 (1)절의 하위 절 (A), (B), (C), [(E)](D) 및 [(G)](F)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뉴욕시 보호 시설 시스템에서 현재 가장 오래 거주 중인 가족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3) 인증 시점에, HRA는 본 장의 섹션 7-06 하위 조항 (a)에 따라 해당 가구의 월별 프로그램 참여자 분담금과 최대 월별 임대료 지원금을 산정한다. 월별 프로그램 참여자 분담금 및 월별 임대료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이나 수입에 변화가 있을 시에도 프로그램 1차년도에는 변경되지 않는다.

(b) 1차년도 이후 갱신

(1) 자금의 가용 여부에 따라 또한 본 하위 조항 (4)절의 여러 조항에 따라, LINC I 임대료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에 지속적으로 부합할 경우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각 1년 간 2번 갱신할 수 있다.

(A) 해당 가구 중 최고 한 명은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가구 중 일을 하고 있는 구성원 또는 구성원들의 근로 시간은 합산하여 비보조금 지원 고용 형태로 주당 최소 35시간이 되어야 한다.

(B) 해당 가구의 총소득 합계는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수립하는 연방 빈곤선의 20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C) 해당 가구 중 적어도 한 명은 DHS 또는 HRA가 지명한 케이스 담당자 또는 고용 벤더와의 연계 하에 해당 가구의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고용 증진 또는 사회복지 지원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D) 해당 가구는 체납된 임대료가 있을 시 이를 신속하게 HRA에 알려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2) 자금의 가용 여부에 따라 본 항의 (1)호에 규정된 지속적인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가구는 케이스별로 HRA의 결정에 따라 LINC I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참여 3차년도 이후 각 1년 간 최대 2번 연장을 받을 수 있다.

(3) HRA는 해당 가구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각 년도가 끝나는 시점에 LINC I 임대료 지원 갱신 자격을 결정하게 되며, 이는 자금의 가용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 (3) 각 1개년 갱신 기간의 개시에 앞서, HRA는 본 장의 7-06조 (a)항에 따라 해당 가구의 월별 프로그램 참여자 분담금과 최대 월별 임대료 지원금을 재산정한다. 월별 프로그램 참여자 분담금 및 월별 임대료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이나 수입에 변화가 있을 시에도 1개년 갱신 기간 동안에는 변경되지 않는다.

(4) 가구가 LINC VI 임대료 지원을 받은 후에 LINC I 프로그램으로 이전된 경우, 해당 가구가 LINC VI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간은 갱신을 위해 LINC I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간으로 간주된다. 만약 해당 주거지에 대해 LINC VI 임대료 지원이 적용되는 첫 번째 임대차 기간의 발효일이 해당 가구가 LINC VI 프로그램에 참여한 첫 해의 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가구의 LINC 임대료 지원의 현재 연도는 해당 임대차 기간의 발표일에 갱신된다. 만약 해당 주거지에 대해 LINC VI 임대료 지원이 적용되는 첫 번째 임대차 기간의 발효일이 해당 가구가 LINC VI 프로그램에 참여한 현재 연도의 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가구의 LINC 임대료 지원의 다음 연도는 해당 임대차 기간의 발표일에 갱신된다.

§ 4. 뉴욕 시 행정 규정 타이틀 68, 섹션 7-04의 제목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 § 7-04 LINC II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a) LINC II 프로그램의 최초 자격 및 인증 요건.

(1) 1년차 LINC II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 자격이 되려면 가구는 인증 당시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A) 해당 가구 중 적어도 한 명은 공공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하며, 공공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가구 구성원은 그러한 혜택을 수령하고 있어야 한다.

(B) 해당 가구는 뉴욕 행정규정 타이틀 18의 섹션 369.2(c)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는 자녀를 포함해야 한다.

(C) 해당 가구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구성원을 적어도 한 명 포함해야 한다.

(i) 뉴욕 주 행정규정 타이틀 18의 351 및 352부에 따라 DHS가 결정하는 바와 같이 또는 뉴욕 행정규정 타이틀 18의 섹션 452.2(g) 및 452.9에 따라 HRA가 결정하는 바와 같이 보호 시설에 거주할 자격이 있어야 [(ii)], 뉴욕시의 보호 시설 시스템에 현재 거주하고 있다. [(D) 본 하위 조항의 (1)절 하위 절 (C)에서 언급한 가구는] 그리고 역일로 3일 간의 공백을 제외하고 인증 전에 90일 연속으로 뉴욕시 보호 시설 시스템에 거주해야 한다[거주했어야 한다]. 혹은,

(ii) LINC VI 임대료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HRA가 정한 양식과 형식으로 LINC I 임대료 지원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E)](D) 가구 구성원이 현재 보호 시설에 있는 경우 또는 해당 가구가 가장 최근에 보호 시설에 거주하는 기간의 첫 번째 날의 5년 이내에 가구 구성원이 LINC VI 임대료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가구 중 최소 한 명은 현 쉼터에서 거주를 시작한 날

로부터 5년 이내에 뉴욕시 쉼터 시스템에서 30일 이상 거주한 적이 2회 이상이어야 한다.

**[(F)](E)** 해당 가구는 근로 및 불로소득을 포함하여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G)](F)** 해당 가구가 보호 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HRA가 보호 시설을 떠날 때 공공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한 상태여야 한다. LINC VI 프로그램에서 LINC II 프로그램으로 이전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HRA가 이전 후에 공공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한 상태여야 한다.

(2) LINC II 임대료 지원금 수령을 위해 인증을 받을 가구의 수는 가용 자금 수준에 따라 제한된다. 본 장의 7-09조 (a)항에 의거해 HRA의 재량에 따라 가구가 본 항의 (1)호에 명시된 자격 요건에 부합하고 해당 가구에게 LINC II 임대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금이 있는 경우 HRA 및/또는 DHS는 이러한 가구에게 인증 서신을 발행하도록 한다. 본 서신은 만료일을 포함하며 해당 가구가 LINC I 임대료 지원이 적용되는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집행되는 시점까지 본 하위 조항 (1)절의 하위 절 (A), (B), (C), **[(F)](E)** 및 **[(G)](F)**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뉴욕시 쉼터 시스템에 가장 오래 거주한 가구에 우선권이 주어지며 추가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 서비스를 수령하는 가족 또는 구성원이 장애인 수당을 수령 중이거나 고용 가능한 성인인 가족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3) 인증 시점에, HRA는 본 장의 섹션 7-06 하위 조항 (a)에 따라 해당 가구의 월별 프로그램 참여자 분담금과 최대 월별 임대료 지원금을 산정한다. 월별 프로그램 참여자 분담금 및 월별 임대료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이나 수입에 변화가 있을 시에도 프로그램 1차년도에는 변경되지 않는다.

(b) 1차년도 이후 갱신

(1) 자금의 가용 여부에 따라 또한 본 하위 조항 (3)절의 여러 조항에 따라, LINC I 임대료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에 지속적으로 부합할 경우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각 1년 간 4번 갱신할 수 있다.

(A) 해당 가구 중 적어도 한 명은 해당 가구 구성원의 고용을 돕거나 고용 상태를 유지 및/또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해당 구성원 또는 가구에 해당되는 혜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속적인 케이스 관리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여야 한다.

(B) 공공 지원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 모든 구성원은 공공 지원을 수령하여야 한다.

(C) 공공 지원을 수령 중인 해당 가구의 구성원들은 해당 공공 지원의 수령과 관련된 해당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B) 해당 가구의 총소득 합계는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수립하는 연방 빈곤선의 200%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E) 해당 가구는 체납된 임대료가 있을 시 이를 신속하게 HRA에 알려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2) HRA는 해당 가구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각 년도가 끝나는 시점에 LINC II 임대료 지원 갱신 자격을 결정하게 되며, 이는 자금의 가용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 (3) 각 1개년 갱신 기간의 개시에 앞서, HRA는 본 장의 7-06조 (a)항에 따라 해당 가구의 월별 프로그램 참여자 분담금과 최대 월별 임대료 지원금을 재산정한다. 월별 프로그램 참여자 분담금 및 월별 임대료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이나 수입에 변화가 있을 시에도 1개년 갱신 기간 동안에는 변경되지 않는다. 갱신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HRA는 가구가 본 항의 (1)호에 규정된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적절하게 가구가 요구 사항을 유지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3) 가구가 LINC VI 임대료 지원을 받은 후에 LINC II 프로그램으로 이전된 경우, 해당 가구가 LINC VI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간은 갱신을 위해 LINC II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간으로 간주된다. 만약 해당 주거지에 대해 LINC VI 임대료 지원이 적용되는 첫 번째 임대차 기간의 발효일이 해당 가구가 LINC VI 프로그램에 참여한 첫 해의 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가구의 LINC 임대료 지원의 현재 연도는 해당 임대차 기간의 발표일에 갱신된다. 만약 해당 주거지에 대해 LINC VI 임대료 지원이 적용되는 첫 번째 임대차 기간의 발효일이 해당 가구가 LINC VI 프로그램에 참여한 현재 연도의 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가구의 LINC 임대료 지원의 다음 연도는 해당 임대차 기간의 발표일에 갱신된다.

§ 5. 뉴욕 시 행정 규정 타이틀 68, 섹션 7-05의 제목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 7-05 LINC III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a) LINC III 프로그램의 최초 자격 및 인증 요건.

(1) LINC III 프로그램에 신청 자격이 되려면 가구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A) 해당 가구는 공공 지원을 수령하고 있어야 한다.

(B) 해당 가구는 뉴욕 행정규정 타이틀 18의 섹션 369.2(c)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는 자녀를 포함해야 한다.

(C) 해당 가구는 인증 시점 및 LINC III 임대료 지원이 적용되는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집행되는 시점까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구성원을 적어도 한 명 포함해야 한다.

(i) 현재 뉴욕 주 행정 규정 타이틀 18, 섹션 452.9 및 뉴욕 사회복지법 섹션 459-a의 정의에 따른 가정 폭력의 피해자로서 뉴욕 주 행정 규정 타이틀 18, 섹션 452.9(g)에 따라 HRA 보호 시설에 거주할 자격이 있으며 DHS 보호 시설에 거주하면서 DHS에서 뉴욕 주 행정 규정 타이틀 18, 351 및 352 부에 따라 결정한 바와 같이 보호 시설에 거주할 자격이 있거나 HRA 보호 시설에 거주할 자격이 있[고 (ii) 현재 뉴욕 주 행정 규정 타이틀 18, 452.2(g) 및 뉴욕 사회복지법 섹션 459-a의 정의에 따른 가정 폭력의 피해자로서 뉴욕 주 행정 규정 타이틀 18, 섹션 452.9에 따라 HRA 보호 시설에 거주할 자격이 있다.

(ii) LINC VI 임대료 지원을 받으면서 HRA가 정한 양식과 형식으로 LINC III 임대료 지원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했고, LINC VI 임대료 지원 신청이 승인될 당시에 뉴욕 주 행정 규정 타이틀 18, 섹션 452.2(g) 및 뉴욕 사회복지법 섹션 459-a의 정의에 따른 가정 폭력의 피해자로서 뉴욕 주 행정 규정 타이틀 18, 섹션 452.9에 따라 HRA 보호 시설에 거주할 자격이 있었다.

(D) 해당 가구는 인증 시점 및 임대차 계약에 대한 서명 시점까지 공공 지원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2) LINC III 임대료 지원금 수령을 위해 인증을 받을 가구의 수는 가용 자금 수준에 따라 제한된다. 본 장의 제7-09조의 (a)항에 의거해 HRA의 재량에 따라 가구가 본 항의 (1)호에 명시된 자격 요건에 부합하고 해당 가구에게 LINC III 임대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금이 있는 경우 HRA 및/또는 DHS는 이러한 가구에게 인증 서신을 발행하도록 한다. 본 서신은 만료일을 포함하며 해당 가구가 본 항의 (1)호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DHS 보호 시설 또는 HRA 보호 시설에 연속으로 가장 오래 거주한 가족, 뉴욕 사회복지법 § 459-b에 따라 180일 한도에 도달하였으며 달리 방법이 없을 경우 DHS 보호 시설에서 방출될 예정인 HRA 보호 시설 거주 가족 및 HRA 보호 시설에서 수용할 수 없어서 현재 DHS 보호 시설에 거주하고 있거나 HRA 보호 시설에서 DHS 보호 시설로 방출된 가족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3) 인증 시점 및 임대차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HRA는 본 장의 제7-06조 (b)항에 의거하여 해당 가구의 최대 월별 임대료, 최대 월별 LINC III 임대료 지원금 및 공공 지원 자격이 없는 가구 구성원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산정하게 된다. LINC III 임대료 지원금액 및 일체의 의무 분담금은 본 장의 섹션 7-06 하위 조항 (b)의 (3)절 및 (2)절 하위 절 (G)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가구가 LINC III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변경될 수 있다.

(4) 어떠한 경우에도 HRA는 본 조의 (a)항 (1)호 (C)목에 규정된 HRA 쉼터에 대한 자격 결정을 낳은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포함된 가구에 대한 LINC III 임대료 지원을 인증하지 않는다.

(b) 지속적인 자격 요건.

가구가 지속적으로 LINC III 임대료 지원을 받는 것은, 가구가 소득이 증대되어 공공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지고, 그 가구의 총소득이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매년 결정하는 연방 빈곤선의 200%를 초과하지 않는 한, 본 항의 (1)호 (A)목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조건이다.

(c) 1차년도 이후 갱신.

(1) 자금의 가용 여부에 따라 또한 본 하위 조항 (4)절의 여러 조항에 따라, LINC III 임대료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에 지속적으로 부합할 경우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각 1년 간 4번 갱신할 수 있다.

(A) 공공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구성원은 공공 지원을 받아야 한다.

(B) 그러한 활동이 해당 가구에 제공될 수 있는 경우, 해당 가구 중 적어도 한 명은 해당 가구 구성원의 고용을 돕거나 고용 상태를 유지 및/또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해당 구성원 또는 가구에 해당되는 혜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속적인 케이스 관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C) 공공 지원을 수령 중인 해당 가구의 구성원들은 해당 공공 지원의 수령과 관련된 해당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D) 해당 가구의 총소득 합계는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수립하는 연방 빈곤선의 200%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E) 해당 가구는 체납된 임대료가 있을 시 이를 신속하게 HRA에 알려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2) HRA는 해당 가구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각 년도가 끝나는 시점에 LINC III 임대료 지원 갱신 자격을 결정하게 되며, 이는 자금의 가용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 각 1개년 갱신 기간의 개시에 앞서, HRA는 본 장의 7-06조 (b)항에 따라 해당 가구의 최대 월별 임대료, 최대 월별 임대료 지원금 및 공공 지원 자격이 없는 가구 구성원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재산정하게 된다. 이러한 재산정은 본 장의 섹션 7-06 하위 조항 (b)의 (2)절 하위 절 (G)에 따른 재산정에 더해 추가로 이루어진다. 갱신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HRA는 가구가 본 하위 조항의 (1)절에 규정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적절하게 가구가 요구 사항을 유지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본 장 섹션 7-06 하위 조항 (b)의 (3)절에 따라 가구의 월간 프로그램 참여자 분담금과 임대료 지원금이 계산되면, 가구의 구성 혹은 수입의 변경에 관계 없이 월간 프로그램 참여자의 분담금과 월간 임대료 지원금은 갱신 첫 1년간은 변경되지 않는다.

(3) 가구가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정의 변경으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거나, 갱신을 하지 않으면 그 가구가 보호 시설로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HRA는 그 재량으로 케이스에 따라 본 하위 조항의 (1)절에 기재된 요구 사항을 면제시킬 수 있다.

(4) 가구가 LINC VI 임대료 지원을 받은 후에 LINC III 프로그램으로 이전된 경우, 해당 가구가 LINC VI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간은 갱신을 위해 LINC III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간으로 간주된다. 만약 해당 주거지에 대해 LINC VI 임대료 지원이 적용되는 첫 번째 임대차 기간의 발효일이 해당 가구가 LINC VI 프로그램에 참여한 첫 해의 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가구의 LINC 임대료 지원의 현재 연도는 해당 임대차 기간의 발표일에 갱신된다. 만약 해당 주거지에 대해 LINC III 임대료 지원이 적용되는 첫 번째 임대차 기간의 발효일이 해당 가구가 LINC VI 프로그램에 참여한 현재 연도의 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가구의 LINC 임대료 지원의 다음 연도는 해당 임대차 기간의 발표일에 갱신된다.

(d) 해당 가구가 초과 소득 또는 뉴욕 사회보장 서비스법 § 342에 따른 사항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하여 공공 지원 수혜 자격을 상실하여 LINC III에 대한 자격이 없어진 경우, 해당 가구는 (a) 해당 공공 지원 혜택이 정지되었을 때 거주하였던 주소에 계속 거주하고 있고 (b) 해당 가구의 공공 지원 혜택이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회복된 경우 LINC III 임대료 지원 다시 받을 수 있다.

§ 6. 뉴욕 시 규칙 타이틀 68 섹션 7-07의 하위 조항 (a)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a) LINC II 인증 서신을 수령하고 있는 보호 시설 거주민 또는 LINC VI 프로그램 참여자 및 LINC II 프로그램 참여자의 LINC II 임대료 지원에 대한 이의 제기.

LINC II 인증 서신을 수령한 보호 시설 거주민 또는 LINC VI 프로그램 참여자 및 LINC II 프로그램 참여자는 뉴욕 행정규정 섹션 18의 358부에 따라 DHS 및/또는 HRA가 본 장의 섹션 7-04에 따라 수행한 결정 사항 또는 조치에 대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Korean

§ 7. 뉴욕 시 행정 규정 타이틀 68, 섹션 7-08의 제목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 7-08 기관 검토 회의 및 HRA 행정 심리 과정.**

**(a) HRA 행정 검토 요청권.**

보호 시설 거주민, LINC VI 프로그램 참여자, 또는 LINC I 또는 LINC III 프로그램 참여자는 본 장의 섹션 7-07 하위 조항 (b)에 명시된 검토 요청권을 행사하여 일체의 결정 사항 또는 조치를 검토하도록 기관 검토 회의 및/또는 HRA 행정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b) 기관 검토 회의.**

(1) 보호 시설 거주민, LINC VI 프로그램 참여자, 또는 LINC I 또는 LINC III 프로그램 참여자는 기관 검토 회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HRA는 제기된 문제를 비공식으로 검토하고 해결하도록 한다.

(2) 보호 시설 거주민, LINC VI 프로그램 참여자, 또는 LINC I 또는 LINC III 프로그램 참여자는 HRA 행정 심리를 요청하지 않고 기관 검토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기관 검토 회의를 요청하는 것이 보호 시설 거주자 또는 프로그램 참여자가 차후 HRA 행정 심리를 요청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3) 본 부속조항의 (4)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관 검토 회의는 이의의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조치가 내려진 후 60일 이내에 요청되어야 한다. 단, HRA 행정 공청회가 예정된 경우, 기관 검토 회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진 공청회 이전에 요청되어야 한다.

(4) 본 항 (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DHS 및/또는 HRA가 본 장의 7-03, 7-04 또는 7-05조에 의한 인증 서신을 발송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한 기관 검토 회의는 해당 가구가 해당 서신을 수신하지 못했을 경우 언제라도 제기될 수 있다.

(5) 기관 검토 회의를 요청하게 되면 본 조 (c)항의 (2)호에 규정된 HRA 행정 심리 요청 기간은 기관 검토 회의일부터 60일까지로 연장된다.

**(c) HRA 행정 심리 요청.**

(1) 행정 심리 요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면 요청서는 우편, 전자 수단 또는 팩스, 또는 향소 통지서에 HRA가 명시한 기타 수단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2) 본 부속조항 (3)호 및 본 조의 부속항 (b) (5)호에 규정된 내용은 제외하고, 행정 공청회 요청은 이의의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조치가 이루어진 후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3) DHS 및/또는 HRA가 본 장 7-03, 7-04 또는 7-05조에 의한 인증 서신을 발송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한 기관 검토 회의의 요청은 해당 가구가 해당 서신을 수신하지 못했을 경우 언제라도 제기될 수 있다.

(d) 승인 대리인.

- (1) 서면 승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 시설 거주자, LINC VI 프로그램 참여자, 또는 LINC I 또는 LINC III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리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기관 검토 회의 또는 행정 심리에서 해당 보호 시설 주인 또는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리하거나 사건 기록을 살펴보려면 보호 시설 주인 또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서면 승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단, 해당 보호 시설 거주자 또는 프로그램 참여자가 수임한 변호사는 이러한 서면 승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해당 변호사의 직원은 변호사의 서면 승인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변호사가 HRA에 전화상으로 해당 직원에 대한 승인 내용을 고지할 경우 위임 대리인으로 간주된다.
- (2) HRA가 개인 또는 기관이 보호 시설 거주자, LINC VI 프로그램 참여자, LINC VI 프로그램 참여자를 기관 검토 회의 또는 행정 심리에서 대리하기로 승인받았음을 고지 받은 경우, 해당 대리인은 해당 회의 및 심리와 관련하여 HRA가 보호 시설 거주자 또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발송한 모든 서신의 사본을 수령한다.

(e) 지원금의 지속.

- (1) 본 장의 섹션 7-03 또는 7-05에 따라 지급되는 임대료 지원금을 감소, 제약, 유예 또는 중단하기로 하거나, 프로그램 참여자가 본 장의 섹션 7-03조의 하위 조항 (b) 또는 섹션 7-03의 하위 조항 (c)에 따른 갱신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HRA의 결정에 대해 LINC I 또는 LINC III 프로그램 참여자가 행정 심리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참여자는 본 섹션의 하위 조항 (l)에 따른 심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결정이 내려진 시점의 실제 임대 지원금에 해당하는 LINC I 또는 LINC III 임대료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할 권리가 있다. 단,
  - (A) 프로그램 참여자는 해당 결정에 대한 통지문이 발송된 지 10일 이내에 행정 불복절차를 요청하여야 한다.
  - (B) 본 불복절차는 부정확한 산출 또는 부정확한 사실 판단을 근거로 제기되는 것 이어야 한다.
- (2) 불복에 대한 유일한 쟁점이 지역, 주 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법 또는 정책, 또는 지역, 주 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법 변경에 대한 것일 경우, 본 하위 조항에 의거한 지속적인 임대료 지원을 받을 권리가 없다.
- (3) 다음의 경우, 심리 판결 전까지 임대료 지원금을 계속 수령할 수 없다.
  - (A) LINC I 또는 LINC III 프로그램 참여자가 서면으로 이러한 지원금을 계속 수령할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였을 경우, 또는
  - (B) LINC I 또는 LINC III 프로그램 참여자가 행정 심리에 출석하지 않고 불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 (4) LINC I 또는 LINC III 프로그램 참여자가 본 조 (m)항에 따른 추가 심리를 요청할 경우, 심리 판결이 내려진 후 본 조의 (l)항에 따라 서면 판결문이 발부될 때까지 임대료 지원금은 중단 없이 계속된다.

Korean

(f) 통지.

HRA는 행정 심리 요청에 대한 사안이 해결되거나 보호 시설 거주자 프로그램 참여자가 자신의 심리 요청을 철회하지 않은 한, 예정된 행정 심리일에서 역일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행정 심리일, 시간 및 장소에 대한 통지문을 해당 보호 시설 거주자, LINC VI 프로그램 참여자, 혹은 LINC I 또는 LINC III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g) 케이스 기록 검토.

보호 시설 거주자, LINC VI 프로그램 참여자, 또는 LINC I 또는 LINC III 프로그램 참여자 또는 그 수권 대리인은 해당 LINC 프로그램 케이스 파일 및 HRA가 행정 심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문서와 기록을 검토할 권리가 있다. 전화 또는 서면 요청이 있을 시, HRA는 해당 보호 시설 거주자 또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이러한 모든 문서의 사본과 해당 보호 시설 거주자 또는 프로그램 참여자가 행정 심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확인하고 요청하는 HRA 및/또는 DHS 소유의 일체 추가 문서 사본을 제공하도록 한다. HRA는 이러한 문서를 행정 심리에 앞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서에 대한 요청이 행정 심리가 열리기 전 5일 이하의 시간이 남아 있을 때 이루어진 경우, HRA는 늦어도 행정 심리 시까지 해당 문서의 사본을 해당 보호 시설 거주자 또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h) 연기.

행정 심리 사무관의 신청을 통해 또는 보호 시설 거주자, LINC VI 프로그램 참여자, 또는 LINC I 또는 LINC III 프로그램 참여자, HRA 또는 DHS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 행정 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

(i) 행정 심리의 실시.

(1) 행정 심리는 HRA가 지명하는 공정한 심리 사무관에 의하여 실시되며 이 심리 사무관에게는 선서를 집행하고 소환장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의의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조치에 관한 사실에 대해 사전에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2) 행정 심리는 자유로운 형식을 취하며 모든 관련된 중요 증거가 채택될 수 있고 증거에 대한 법적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 심리는 해당 행정 심리 요청 사유인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제기된 사실관계 또는 법적 사안에 한정된다.

(3) 보호 시설 거주자, LINC VI 프로그램 참여자, 또는 LINC I 또는 LINC III 프로그램 참여자는 법적 대리인 또는 기타 대리인의 대리를 받고, 증언하고, 증인을 세우고, 증거 서류를 제출하고, HRA 및 DHS가 제출한 증거에 반박할 증거를 제공하고, 심리 사무관에게 소환장 발부를 요청하고, HRA 및 DHS가 제공한 일체 서류를 검토할 권리가 있다.

(4) 행정 심리에 대한 음성 녹음, 시청각 녹화 또는 필기록을 작성한다.

(j) 행정 심리 요청의 포기.

(1) 해당 보호 시설 거주자 또는 LINC I [또는], LINC III, 또는 LINC VI 프로그램 참여자 또는 그 승인 대리인이 행정 심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HRA는 행정 심리 요청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A) 행정 심리가 열리기 전 심리 일정 조정을 위하여 HRA에 연락한 경우, 또는

(B) 예정된 행정 심리일로부터 역산하여 15일 이내에 HRA에 연락하여, 예정된 일자에 행정 심리에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2) 보호 시설 거주자, LINC VI 프로그램 참여자, 또는 LINC I 또는 LINC III 프로그램 참여자 또는 수권 대리인이 본 하위 조항의 (1)절 요구 사항을 만족할 경우, HRA는 해당 사건의 일정을 다시 정한다.

(k) 심리 기록.

심리에 대한 녹취 또는 필기록, 심리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서류 및 요청서 및 심리 판결문은 집합적으로 해당 행정 심리에 대한 완전하고 유일한 기록이 된다.

(l) 심리 결정.

(1) 심리 사무관은 심리 기록에만 기반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해당 심리 결정 사안, 관련 사실, 해당 결정이 근거한 관련 법규 및 규칙, 승인된 정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결정은 판단될 사안을 규명하고, 사실을 확정하고, 결정 사항에 대한 사유를 진술하고, 해당하는 경우 HRA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한다.

(2) 보호 시설 거주민, LINC VI 프로그램 참여자, 또는 LINC I 또는 LINC III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한 추가 심리 요청권 및 해당 심리 요청 절차에 대한 서면 통지서와 함께 판결문의 사본이 각 당사자 및 해당하는 경우 승인 대리인에게 발송된다.

(m) 추가 불복.

(1) 심리 사무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제기는 HRA 국장 또는 그로부터 지명받은 사람에게 서면으로 한다. 단, 이는 심리 결정문과 함께 발송된 통지문에 설명된 절차를 통해, 심리 사무관의 결정이 전달된 후 늦어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HRA에 접수하여야 한다. HRA 국장 앞으로 제출될 기록은 해당 공청회 기록, 공청회 담당관의 판결문, 선서진술서, 서류 증거 또는 보호 시설 거주자, LINC VI 프로그램 참여자, 또는 LINC I 또는 LINC III 프로그램 참여자가 제출하고자 할 경우 서면 의견서로 구성되도록 한다.

(2) 국장 또는 그 피지명자는 보호 시설 거주자, LINC VI 프로그램 참여자, 또는 LINC I 또는 LINC III 참여자 및 HRA 또는 DHS가 제출한 심리 기록 및 추가 서류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판결을 내리도록 한다.

(3) 판결문의 사본이 보호 시설 거주자, LINC VI 프로그램 참여자, 또는 LINC I 또는 LINC III 참여자 및 HRA 또는 DHS가 제출한 심리 기록 및 추가 서류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판결을 내리도록 한다.

(4) 본 조에 따라 불복에 대하여 국장 또는 그 피지명자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것은 최종적이며 HRA에 대하여 구속력을 지니며 HRA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8. 뉴욕 시 행정 규정 타이틀 68, 섹션 7-09의 제목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 7-09 추가 조항.**

(a) 가구가 2개 이상의 LINC 프로그램 자격에 해당될 경우, HRA 및 DHS는 행정 및 프로그램 상의 필요에 따라 어떠한 LINC 프로그램을 해당 가구에게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HRA 및 DHS는 또한 행정 및 프로그램 상의 필요에 따라 각 LINC 프로그램에 대한 가용 자금을 사용할 시기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b) HRA 및 DHS는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LINC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참여 가구를 지역 사회의 적절한 서비스에 연결하여 지원할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낸다.

(c) HRA 및 DHS는 미국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노숙자 방지 및 신속 주택 제공 프로그램(Homelessness Prevention and Rapid Re-Housing Program)에 따라 가용 자원을 평가하고, 해당하는 경우 가구의 LINC I 및 LINC II 임대료 지원 자격을 결정하기에 앞서 이러한 자원을 장기적인 임대료 지원을 위한 대안으로 활용한다.

(d) 뉴욕 주 행정 규정(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의 타이틀 18, 섹션 352.6에 규정된 바와 같이, HRA는 보호 시설에서 이사하는 가구의 이사 비용, 1개월 임대료에 해당하는 보증금 바우처 및 최고 1개월 임대료에 해당하는 중개 수수료를 가구에 제공한다.

(e)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LINC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된 임대료 지원금은 뉴욕 행정규정 타이틀 18의 섹션 352.3에 따라 제공되는 공공 지원 쉼터 수당을 제외한 다른 임대 보조금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f)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LINC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임대료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실직 또는 정상을 참작할 만한 다른 사유로 인하여 프로그램 참여자 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는 가구는 뉴욕 행정규정 타이틀 18 섹션 [352.7] 352.07에 따른 긴급 임대료 지원금 및 체납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다.

(g) HRA 및 DHS는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LINC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대기자 명단을 관리하지 않는다.

(h) 보호 시설 거주자 및 LINC VI 프로그램 참여자는 차후 거주할 주택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쉼터 직원이 쉼터 주민의 주거지 탐색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i)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LINC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하에서 임대료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가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주는 가구 구성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임대차 계약서에 규정된 임대료 또는 수수료 이상의 금액을 요구, 요청 또는 수령할 수 없다. 임대차 계약에 명시된 금액 이상을 요구, 요청 또는 수령한 임대주는 HRA의 모든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자격이 박탈되며 뉴욕시가 관리하는 기타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없다. 임대주를 부적격자 명단에 등재하기 전, HRA는 임대주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여 서면으로 반박할 기회를 제공한다.

(j) 프로그램 참여자가 퇴거명령 또는 이사로 인해 LINC I, LINC II 또는 LINC III 임대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파트를 떠나게 되는 경우, 임대주는 초과 지급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k) 본 하위 장에 따라 LINC 임대료 지원이 적용된 거주지는 뉴욕 시의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미국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타이틀 24, 섹션 982.401에 규정된 섹션 8 주택 품질 표준(Section 8 Housing Quality Standards)이 아파트의 물리적 상태에 대한 검사 과정에 적용된다. 한 아파트를 점유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각 가구에 대해 케이스별로 평가된다.

(l)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LINC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조건으로 임대주는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LINC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고 뉴욕시에서 해당 가구가 해당 프로그램 2차년도 지원 자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거나, 해당 가구가 2차년도에 임대료 전체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경우, 1차년도와 동일한 월별 임대료로 해당 가구의 2차년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며,

(2) 2차, 3차 및 4차년도 후, 해당 주거지가 임대 안정화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전년도와 동일한 총 월별 임대료로 참여 가구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도록 하며, 임대료 증가분은 1차년도 임대차 계약 시 뉴욕시에 소재한 임대 안정화 대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단, (a)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가용 자금이 있고 뉴욕시에서 해당 참여 가구가 해당 년도에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거나, (b) 참여 가구가 해당 년도에 대한 임대료 전체를 납부할 능력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 9. 뉴욕 시 규칙 타이틀 68 섹션 7-10의 하위 조항 (b)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b) "노숙자 성인"은 다음과 같은 개인을 의미한다.

(1) 2011년 지방법 37에 의거하여 추가된 뉴욕시 행정법 제3-113조에 정의되어 있는 바와 같이 DHS에서 직접 또는 대리 운영하는 독신자 보호시설, DHS 재향 군인 보호 시설(veterans shelter), DHS 보호센터(Drop-in center), DHS 대피소(safe haven)에 거주하는 개인

(2) 뉴욕시 행정 규정 제18장 351부 및 352부에 의거하여 DHS의 결정에 따라 DHS에서 직접 또는 대리 운영하는 성인 가족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보호시설에 거주할 자격을 가진 개인

(3) 보호시설 또는 거주지, 기타 숙소에 거주하지 않지만 기타 임시 또는 영구 주거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개인

(4) DHS와의 협의를 거쳐 HRA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DHS에서 직접 또는 대리 운영하는 독신 성인 또는 성인 가족을 위한 보호 시설로 입소될 위기에 처해 있는 개인

(5) 임대료 지원을 받고 있고 해당 임대료 지원 신청이 승인될 당시에 본 하위 조항 (1), (2), (3) 또는 (4)에 따라 노숙 성인에 대한 정의를 충족했고 HRA가 정한 양식과 형식으로 LINC I 임대료 지원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 10. 뉴욕 시 규칙 타이틀 68 섹션 7-13의 하위 조항 (b)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b) 1차년도 이후 갱신

(1) 자금의 가용 여부에 따라 또한 본 하위 조항 (5)절의 여러 조항에 따라, LINC I 임대료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에 지속적으로 부합할 경우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각 1년 간 4번 갱신할 수 있다.

(A) 가구 구성원 중 한 명 이상은 보조금을 받지 않는 고용 상태로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B) 해당 가구의 총소득 합계는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수립하는 연방 빈곤선의 200%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C) 이러한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가구인 경우, 적어도 가구 구성원 중 한 명은 DHS 또는 HRA가 지명한 케이스 담당자 또는 고용 벤더와의 연계 하에 해당 가구의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고용 증진 또는 사회복지 지원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D) 공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모든 가구원이 공공지원을 받아야 한다.

(E) 해당 가구는 체납된 임대료가 있을 시 이를 신속하게 HRA에 알려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2) 자금의 가용 여부 및 보호시설로 입소 또는 재입소하거나 거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본 하위 조항의 (1)절에 규정된 지속적인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가구는 케이스별로 HRA의 결정에 따라 LINC V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참여 5차년도 이후 추가로 1년 연장을 받을 수 있다.

(3) HRA는 해당 가구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각 년도가 끝나는 시점에 LINC V 임대료 지원 갱신 자격을 결정하게 되며, 이는 자금의 가용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 (3) 각 1개년 갱신 기간의 개시에 앞서, HRA는 본 장 제7-14조에 따라 해당 가구의 월별 프로그램 참여자 분담금과 월별 임대료 지원금을 재산정한다. 본 장의 7-15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월간 프로그램 참여자의 분담금과 월간 임대료 지원 금액은 가구의 구성원 또는 소득의 변경이 있을 시에도 갱신된 1년의 기간 동안은 변경되지 않는다.

(4) HRA는 그 재량으로 케이스에 따라 본 하위 조항 (1)호에 기재된 요구 사항을 면제시킬 수 있다. 가구가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정의 변경으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거나, 갱신을 하지 않으면 그 가구가 보호시설로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등 일 때 그러하다.

(5) 가구가 LINC VI 임대료 지원을 받은 후에 LINC V 프로그램으로 이전된 경우, 해당 가구가 LINC VI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간은 갱신을 위해 LINC V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간으로 간주된다. 만약 해당 주거지에 대해 LINC VI 임대료 지원이 적용되는 주거지에 대한 첫 번째 임대차 또는 임대 계약의 발효일이 해당 가구가 LINC VI 프로그램에 참여한 첫 해의 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가구의 LINC 임대료 지원의 현재 연도는 해당 임대차 또는 임대 계약의 발표일에 갱신된다. 만약 해당 주거지에 대해 LINC VI 임대료 지원이 적용되는 주거지에 대한 첫 번째 임대차 또는 임대 계약의 발효일이 해당 가구가 LINC VI 프로그램에 참여한 첫 해의 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가구의 LINC 임대료 지원의 다음 연도는 해당 임대차 또는 임대 계약의 발표일에 갱신된다.

§ 11. 뉴욕 시 규칙 타이틀 68 섹션 7-20의 하위 조항 (a)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a) LINC VI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최초 신청자격.

(1) 최초 년도 LINC VI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신청 자격이 되려면, 가구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A) 해당 가구 중 한 명 이상은 공공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하며, 공공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가구 구성원은 그러한 혜택을 수령하여야 한다.

(B) 해당 가구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i) 뉴욕 행정규정(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타이틀 18의 섹션 369.2(c)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는 자녀[(C) 해당 가구는] 및 다음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i)] (I) 뉴욕 주 행정규정 제18편의 351 및 352부에 의해 DHS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뉴욕 행정규정 제18편의 제452.2(g) 및 452.9조에 의해 HRA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시설에 거주할 자격이 있다. [또한 (ii)]

(II) 현재 뉴욕 시 보호 시설 시스템에 거주한다. [(D) 본 하위 조항의 (1)절 하위 절 (C)에서 언급한 가구는] 또한

(III) 역일로 3일 간의 공백을 제외하고 인증 전에 90일 연속으로 뉴욕시 보호 시설 시스템에 거주한다[거주했어야 한다]

(ii) 본 장의 섹션 7-10 하위 조항 (b)의 (1)절에 규정된 설명을 충족하고 2015년 5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 사이의 기간에 DHS가 운영하거나 DHS를 대신하여 운영되는 보호 시설에 거주했던 구성원

(iii) 본 장의 섹션 7-10 하위 조항 (b)의 (2), (3) 또는 (4)절에 규정된 설명을 충족하는 구성원

[(E)](C) 가구는 자신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본 장 섹션 7-21조의 하위 조항 (a)의 표에서 정한 최대 임대료를 과하지 않는 금액을 월 임대료로 받는 것에 동의하는 뉴욕시에 거주하는 가구의 가족 혹은 친구로 구성되는 주인 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F)](D) 주인 가구와 주인 가구의 주택은 본 장 섹션 7-24조 하위 조항 (j)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여야 한다.

[(G)(E) 해당 가구의 총소득 합계는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연방 빈곤선의 20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 HRA는 최소한 다음의 구성원을 한 명 이상 포함하는 경우 본 하위 조항 (1)절의 하위 절 (B) (i)항 (I)-(III)에 규정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구성원 포함에 대한 요구 사항[하위 절 (C) 및 (D)의 요구 조건]을 포기할 수 있다.

(i) 가구 구성원이 최근에 보호 시설에 대한 신청을 하기 전에 10일 이내 뉴욕 시 보호 시설에서 나왔어야 한다.

(ii) 가구의 구성원이 최근에 뉴욕 시 보호 시설에서 나온 날짜에[가구 구성원이] 본 하위 조항 (1) (i)항 (I)-(III)에 [하위 절 (C) 및 하위 절 (D)] 규정된 요구 사항을 충족했다.

(3) LINC VI 임대료 지원금 수령을 위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수는 가용 자금 규모에 따라 제한된다. 신청서는 HRA가 DHS와 협의하여 정하는 양식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12. 뉴욕 시 행정 규정 타이틀 68, 섹션 7-23의 제목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 7-23 기관 검토 회의 및 HRA 행정 불복 과정.**

(a) HRA 행정 검토 요청권.

[보호 시설 거주자] 신청자 또는 LINC VI 프로그램 참여자는 기관 검토 회의 및/또는 HRA 행정 심리를 요청하여, DHS 및/또는 HRA가 본 하위 장의 조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조치를 지체하였을 경우를 포함하여, 본 하위 장에 따라 DHS 및/또는 HRA에서 내린 결론 또는 조치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b) 기관 검토 회의.

(1) [보호 시설 거주자] 신청자 또는 LINC VI 프로그램 참여자가 기관 검토 회의를 요청할 경우, HRA는 제기된 문제를 비공식으로 검토하고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도한다.

(2) [보호 시설 거주자] 신청자 또는 LINC VI 프로그램 참여자는 HRA 행정 심리를 요청하지 않고 기관 검토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기관 검토 회의를 요청하는 것이 [보호 시설 거주자] 신청자 또는 프로그램 참여자가 차후 HRA 행정 심리를 요청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3) 기관 검토 회의는 이의의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조치가 내려진 후 60일 이내에 요청되어야 한다. 단, HRA 행정 심리 일정이 정해진 경우, 기관 검토 회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진 행정 심리일 전에 요청되어야 한다.

(4) 기관 검토 회의를 요청하게 되면 본 조 (c)항의 (2)호에 규정된 HRA 행정 심리 요청 기한은 기관 검토 회의일부터 60일까지로 연장된다.

(c) HRA 행정 심리 요청.

(1) 행정 심리 요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면 요청서는 우편, 전자 수단 또는 팩스, 또는 항소 통지서에 HRA가 명시한 기타 수단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2) 본 조 (b)항의 (4)호에 규정된 내용은 제외하고, 행정 심리 요청은 이의의 대상이 되는 결정사항 또는 조치가 이루어진 후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d) 권한을 가진 대리인.

(1) 승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 시설 거주자] 신청자 또는 LINC VI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리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해당 보호 시설 거주자 또는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리하거나 사건 기록을 살펴보려면 [보호 시설 거주자] 신청자 또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서면 승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해당 보호 시설 거주자 또는 프로그램 참여자가 수임한 변호사는 그러한 [보호 시설 거주자] 신청자 또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서면 승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해당 변호사의 직원은 변호사의 서면 승인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변호사가 HRA에 전화상으로 해당 직원에 대한 승인 내용을 고지할 경우 위임 대리인으로 간주된다.

(2) HRA가 개인 또는 기관이 [보호 시설 거주자] 신청자 또는 LINC VI 프로그램 참여자를 기관 검토 회의 또는 행정 심리에서 대리하기로 승인받았음을 고지 받은 경우, 해당 대리인은 해당 회의 및 심리와 관련하여 HRA가 [보호 시설 거주자] 신청자 또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발송한 모든 서신의 사본을 수령하게 된다.

(e) 지원금의 지속.

(1) 본 장 제7-21조에 따라 지급되는 임대료 지원금을 감소, 제약, 유예 또는 중단하기로 하거나, 프로그램 참여자가 본 장 제7-20조 (b)항 규정에 따른 갱신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HRA의 결정에 대해 LINC VI 프로그램 참여자가 행정 심리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참여자는 본 조 (l)항에 따른 심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결정이 내려진 시점에 수령하던 임대료 지원금에 해당하는 LINC VI 임대료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할 권리가 있다. 단, 다음 조건이 적용된다.

(A) 프로그램 참여자는 해당 결정에 대한 통지문이 발송된 지 10일 이내에 행정 불복절차를 요청하여야 한다.

(B) 본 불복절차는 부정확한 산출 또는 부정확한 사실 판단을 근거로 제기되는 것이어야 한다.

(2) 불복에 대한 유일한 쟁점이 지역, 주 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법 또는 정책, 또는 지역, 주 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법 변경에 대한 것일 경우, 본 하위 조항에 의거한 지속적인 임대료 지원을 받을 권리가 없다.

(3) 다음의 경우, 심리 판결이 발표될 때까지 임대료 지원금을 계속 수령할 수 없다.

(A) LINC VI 프로그램 참여자가 서면으로 이러한 지원금을 계속 수령할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였을 경우, 또는

(B) LINC VI 프로그램 참여자가 행정 심리에 출석하지 않고 불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4) LINC VI 프로그램 참여자가 본 세션의 하위 조항 (m)에 따라 추가 심리를 요청할 경우, 심리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중단되지 않고, 본 조의 (l)항에 따라 서면 판결문이 발행될 때까지 임대료 지원금은 중단 없이 계속된다.

(f) 통지.

HRA는 행정 심리 요청에 대한 사안이 해결되거나 [보호 시설 거주자] 신청자 또는 LINC VI 프로그램 참여자가 자신의 심리 요청을 철회하지 않은 한, 예정된 행정 심리일에서 역일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행정 심리일, 시간 및 장소에 대한 통지문을 해당 [보호 시설 거주자] 신청자 또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g) 케이스 기록 검토.

[보호 시설 거주자] 신청자 또는 LINC VI 프로그램 참여자 또는 그 승인 대리인은 해당 LINC 프로그램 케이스 파일 및 HRA가 행정 심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문서와 기록을 검토할 권리가 있다. 전화 또는 서면 요청이 있을 시, HRA는 해당 [보호 시설 거주자] 신청자 또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이러한 모든 문서의 사본과 해당 [보호 시설 거주자] 신청자 또는 프로그램 참여자가 행정 심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확인하고 요청하는 HRA 및/또는 DHS 소유의 일체 추가 문서 사본을 제공하도록 한다. HRA는 이러한 문서를 행정 심리에 앞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서 대한 요청이 행정 심리가 열리기 전 5일 이하의 시간이 남아있을 때 이루어진 경우, HRA는 늦어도 행정 심리 시까지 해당 문서의 사본을 해당 [보호 시설 거주자] 신청자 또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h) 연기.

행정 심리 사무관의 신청을 통해 또는 [보호 시설 거주자] 신청자 또는 LINC VI 프로그램 참여자, HRA 또는 DHS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 행정 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

(i) 행정 심리의 실시.

(1) 행정 심리는 HRA가 지명하는 공정한 심리 사무관에 의하여 실시되며 이 심리 사무관에게는 선서를 집행하고 소환장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의의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조치에 관한 사실에 대해 사전에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2) 행정 심리는 자유로운 형식을 취하며 모든 관련된 중요 증거가 채택될 수 있고 증거에 대한 법적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 심리는 해당 행정 심리 요청 사유인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제기된 사실관계 또는 법적 사안에 한정된다.

(3) [보호 시설 거주자] 신청자, 또는 LINC VI 프로그램 참여자는 법적 대리인 또는 기타 대리인의 대리를 받고, 증언하고, 증인을 세우고, 증거 서류를 제출하고, HRA 및 DHS가 제출한 증거에 반박할 증거를 제공하고, 심리 사무관에게 소환장 발부를 요청하고, HRA 및 DHS가 제공한 일체 서류를 검토할 권리가 있다.

(4) 행정 심리에 대한 음성 녹음, 시청각 녹화 또는 필기록을 작성한다.

(j) 행정 심리 요청의 포기.

(1) 해당 [보호 시설 거주자] 신청자 또는 LINC VI 프로그램 참여자 또는 그 승인 대리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보호 시설 거주자] 신청자 또는 LINC VI 프로그램 참여자 또는 그 승인 대리인이 행정 심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행정 심리 요청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A) 행정 심리가 열리기 전 심리 일정 조정을 위하여 HRA에 연락한 경우, 또는

(B) 예정된 행정 심리일로부터 역산하여 15일 이내에 HRA에 연락하여, 예정된 일자에 행정 심리에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2) [보호 시설 거주자] 신청자 또는 LINC VI 프로그램 참여자 또는 본 하위 조항의 (1)절 요구 사항을 만족할 경우, HRA는 해당 케이스의 일정을 다시 정한다.

(k) 심리 기록.

심리에 대한 녹취 또는 필기록, 심리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서류 및 요청서 및 심리 판결문은 집합적으로 해당 행정 심리에 대한 완전하고 유일한 기록이 된다.

(l) 공청회 판결.

(1) 심리 사무관은 오직 심리 기록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린다.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해당 심리 결정 사안, 관련 사실, 해당 결정이 근거한 관련 법규 및 규칙, 승인된 정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결정은 판단될 사안을 규명하고, 사실을 확정하고, 결정 사항에 대한 사유를 진술하고, 해당하는 경우 HRA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한다.

(2) [보호 시설 거주자] 신청자 또는 LINC VI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한 추가 심리 요청권 및 해당 심리 요청 절차에 대한 서면 통지서와 함께 결정문의 사본이 각 당사자 및 해당하는 경우 승인 대리인에게 발송된다.

(m) 추가 불복.

(1) 심리 사무관의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는 HRA 국장 또는 그 피지명자를 수신인으로 한 서면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단, 이는 심리 판결문과 함께 발송된 통지문에 설명된 절차를 통해 심리 사무관의 판결이 전달된 후 영업일 기준 최소 5일 이내에 HRA에 의해 수령되어야 한다. HRA 국장 앞으로 제출될 기록은 해당 공청회 기록, 공청회 담당관의 결정문, 선서진술서, 서류 증거 또는 [보호 시설 거주자] 신청자 또는 LINC VI 프로그램 참여자가 제출하기를 원할 경우 서면 의견서로 구성되도록 한다.

(2) 국장 또는 그 피지명자는 [보호 시설 거주자] 신청자 또는 LINC VI 참여자 및 HRA 또는 DHS가 제출한 심리 기록 및 추가 서류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3) 결정문의 사본이 [보호 시설 거주자] 신청자 또는 LINC VI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법 심사 요청권에 대한 안내서와 함께 각 당사자 및 해당하는 경우 승인 대리인에게 발송된다.

(4) 본 조에 따라 불복에 대하여 국장 또는 그 피지명자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것은 최종적이며 HRA에 대하여 구속력을 지니며 HRA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13. 뉴욕 시 규칙 타이틀 68 섹션 7-24의 하위 조항 (j)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j) LINC VI 임대료 지원이 적용되는 모든 주택은 안전 및 주거적합 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해당 가구에 18세 이하의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인 가구는 최소한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에 관한 주 중앙 등록처의 기록에 가족 구성원이 포함되었는가에 대한 평가와 주인 가족의 구성원이 뉴욕 교정법 제6-C조에 따른 성폭력범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확인을 거쳐야 한다.

§ 14. 뉴욕 시 규칙 타이틀 68의 섹션 8-03 하위 조항 (a), (1)절, 하위 절 (B)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C) 가구는 다음에 해당해야 한다.

(i) 뉴욕 주 행정 규정 타이틀 18의 섹션 452.2(g) 및 뉴욕 사회복지법 459-a 조의 정의에 따라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뉴욕 주 행정 규정 타이틀 18의 섹션 452.9에 따라 현재 HRA에 거주할 자격이 있으며,

(I) DHS 쉼터에 거주하고 있으나 HRA 쉼터 배치를 거부한 적이 없으며, 또는

(II) HRA 쉼터에 거주하고 있으며 뉴욕 사회보장 서비스법 § 459-b 에 따라 최대 허용 거주 기간에 도달하였고,

(ii) 뉴욕 주 행정 규정 타이틀 18의 파트 351 및 352에 따라 DHS 쉼터 거주 자격 요건에 해당하며, 뉴욕 시 쉼터 시스템에 거주하고 있으며 뉴욕 시 쉼터 시스템에 입소하기 전 12개월 이내에 퇴거된 적이 있거나 뉴욕 시에 위치한 한 거주지를 떠난 적이 있는 경우로, (a) 해당 거주지가 퇴거 소송의 대상이었거나 (b) 또는 해당 가구가 해당 거주지를 떠난 사유가 뉴욕 시 기관에서 발부한 퇴거 명령 또는 압류 조치의 결과이거나 뉴욕 주 행정 규정

타이틀 18의 섹션 452.9에 따라 해당 가구에게 쉼터 거주 자격을 부여할 만한 사유가 아닌 뉴욕 시 기관이 판단한 보건 및 안전상의 이유인 경우

(iii) DHS와의 협의 후 HRA가 내린 결정에 따라 DHS 쉼터에 입소할 위기에 처해있으며 지난 12개월 이내에 퇴거된 적이 있거나 뉴욕 시에 위치한 한 거주지를 떠난 적이 있는 경우로, (a) 해당 거주지가 현재 또는 과거에 퇴거 소송의 대상이었거나 (b) 또는 해당 가구가 해당 거주지를 과거에 떠나거나 또는 현재 떠나야만 하는 사유가 사유가 뉴욕 시 기관에서 발부한 퇴거 명령 또는 압류 조치의 결과이거나 뉴욕 주 행정 규정 타이틀 18의 섹션 452.9에 따라 해당 가구에게 쉼터 거주 자격을 부여할 만한 사유가 아닌 뉴욕 시 기관이 판단한 보건 및 안전상의 이유인 경우

(iv) 본 타이틀 7장의 하위 장 C에 따른 임대료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가구가 해당 임대료 보조금을 수령할 당시에 본 하위 절 (i), (ii) 또는 (iii)항의 요구 사항을 충족했다.

§ 15. 뉴욕 시 규칙 타이틀 68의 섹션 8-04 하위 조항 (a), (1)절, 하위 절 (C)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C) 해당 가구는 폐쇄가 임박한 DHS 보호 시설에 거주하고 있거나 본 타이틀 7장의 하위 장 C에 따른 임대료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가구가 해당 임대료 보조금을 수령할 당시에 폐쇄가 임박한 DHS 보호 시설에 거주했다.

**NEW YORK CITY LAW DEPARTMENT  
DIVISION OF LEGAL COUNSEL  
100 CHURCH STREET  
NEW YORK, NY 10007  
212-356-4028**

뉴욕 시 헌장 §1043(d)에 근거한

인증 절차

규정 표제: LINC VI 프로그램의 개정(비긴급 규칙)

참조 번호: 2015 RG 125

규정 제정 기관: 인적 자원 관리국(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본인은 인적자원국에서 뉴욕 시 헌장 제1043(d)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에 언급된 규칙안을 검토하였으며 상기에 언급된 규칙안이 다음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 (i) 상기 규칙안은 법적 근거가 되는 해당 조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 (ii) 다른 준거 규칙과 상충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며,
- (iii) 실행 가능하고 적절한 한도 내에서,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범위를 집약하였으며,
- (iv) 실행 가능하고 적절한 한도 내에서, 규칙과 규칙이 설정하는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상황과 목적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s/ STEVEN GOULDEN  
뉴욕 시 변호인 대행

날짜: 2015년 10월 29일

NEW YORK CITY MAYOR'S OFFICE OF OPERATIONS  
253 BROADWAY, 10<sup>th</sup> FLOOR  
NEW YORK, NY 10007  
212-788-1400

뉴욕 시 현장 섹션 1043(d)에 근거한  
확인/분석

규정 표제: LINC VI 프로그램의 개정(비긴급 규칙)  
참조 번호: HRA-14  
규정 제정 기관: HRA

본인은 본 사무실에서 상기에 언급된 규칙안을 뉴욕 시 현장 섹션 1043(d)의 규정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증합니다. 상기 규칙안은

- (i) 각 해당 지역사회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한 언어로 작성되었으며,
- (ii) 각 해당 지역사회에서 명시된 본 규정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 소요되는 준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 (iii) 본 규칙안에는 위반, 위반사항의 변경 또는 위반사항과 관련된 처벌의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정 기간(cure period)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s/ Elvita Dominique  
뉴욕 시 시장 운영실

2015년 10월 29일  
날짜